

第134回(臨時會)

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市民行政委員會會議錄

第1號(附錄)

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

目 次

1. 서울特別市鐘路區統·班設置條例中改正條例(案)	1面
○서울特別市鐘路區統·班設置條例中改正條例(案) 檢討報告書	4面
2. 서울特別市鐘路區鐘路區新廳舍建立基金設置 및 運用條例(案)	9面
○서울特別市鐘路區鐘路區新廳舍建立基金設置 및 運用條例(案) 檢討報告書	12面
3. 서울特別市鐘路區洞事務所名稱과所在地 및 管轄區域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(案)	17面
○서울特別市鐘路區洞事務所名稱과所在地 및 管轄區域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(案) 檢討報告書	19面
4. 서울特別市鐘路區第2의建國汎國民推進委員會設置 및 運營에 관한條例廢止條例(案)	20面
○서울特別市鐘路區第2의建國汎國民推進委員會設置 및 運營에 관한條例廢止條例(案) 檢討報告書	21面
5. 2003年度 第2回 市民行政委員會 所管 追加更正豫算(案) 檢討報告書	22面

1. 서울특별시종로구통·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94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3. 8.

제 출 자 : 조기태의원 의 7인

1. 개정이유

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, 동행정 및 주민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88. 5. 1 조례로 정하여 설치된 통의 하부조직인 통·반조직을 운영함에 있어, 현실에 맞지 않는 통장의 위촉 상한연령 및 통·반조직의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골자

- 가. 현행 1통의 기준 6개 반 내지 8개 반을 10개 반으로 2개 반을 늘려 상향조정하고, 반은 20가구 내지 40가구를 60가구로 20가구를 늘려 상향조정하여 특수한 지역사정의 경우에 통·반을 조정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함(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)
- 나. 통장의 임기 중 해당 통장의 연령이 위촉자격 상한연령에 도달하는 때에는 도달하는 날로 당연해촉하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함(안 제4조)
- 다.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수명【남(72.1세)·여(79.5세)】이 75.9세임을 감안하여 통장 위촉상한 연령을 60세 이하에서 65세 이하로 5세 늘리되,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위촉규정을 삭제하여 전·후 문맥을 고르게 정비함(안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3호)

라. 조례의 시행기일은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, 이 조례 시행 당시 통장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 통장의 지위를 존중·보호·유지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둠(부칙 제1항 및 제2항)

3. 관련법령

○ 지방자치법 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) 제6항(동의 하부조직)

4. 예산수반사항 : 필요없음

5. 개정(안) 및 신·구조문대비표 : 따로붙임

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종로구통·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종로구통·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중 “6개 반 내지 8개 반”을 “6개 반 내지 10개 반”으로 하고, 동조제3항중 “20가구 내지 40가구”를 “20가구 내지 60가구”로 한다.

제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임기 중 해당 통장의 연령이 위촉자격 상한연령에 도달하는 때에는 도달하는 날로 당연 해촉된다.

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동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.

②통장은 당해 통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로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를 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통장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.

